

# 제일연금 보험

1. 생존연금 보험 약관
2. 종신보험 약관
3. 유족연금 보험 약관
4. 특약 약관

## ① 재해상해 특약

### [생존연금보험 약관]

제 1 조【보험의 내용】 ①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이하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를 합하여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보험수의자(이하 “수의자”라 합니다)에게 별표 1에 정한 생존연금 또는 사망급부금을 드립니다.

1. 생존연금 지급개시일 이후 매년 연금지급일에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때.
2. 연금지급 개시일 이후부터 10년이내에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피보험자 각각에 대하여 10회까지의 총지급 연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차인한 금액을 사망급부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료납입기간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별표 2에서 정한 장해등급 분류표증 1급에 해당하는 신체장애(이하 “폐질”이라 합니다) 또는 2급, 3급 장해상태가 있을 때(단, 본인형 계약에서 사망은 제외)에는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장해상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 현재의 장해상태의 진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 2 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보험의 피보험자는 본인형 계약에 있어서는 주피보험자 단일로 하고 부부형 계약에 있어서는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로 구성합니다.  
② 부부형으로 가입시 이 보험의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는 동일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부부로 하며 주피보험자는 남편이어야 하고 종피보험자는 그 부인으로 합니다.  
③ 계약의 체결후에 종피보험자 주피보험자의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에서 제적되었을 경우에는 제적된 날로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제 3 조【회사의 책임기간】 ① 회사는 보험계약(이하 “계약”

이라 합니다)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제 1 회 보험료 가수증을 교부하고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후에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 (건강조사를 받는 계약의 경우에는 건강 조사를 끝냈을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가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알리며, 보험 증권의 교부는 승낙의 통지로 봅니다. 또한 제 1 항 후단의 경우 청약서가 회사에 접수된 날(건강조사를 받는 계약의 경우에는 조사일)로부터 15일이 지나면 회사가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 1 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건강조사를 받는 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조사를 끝냈을 때) 현재, 피보험자가 이 계약의 적격 피보험체임이 명백한 경우 제 1 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건강조사를 받는 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조사를 끝냈을 때)로 소급하여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적격 피보험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 관이 정한 바에 따른 책임(피보험자의 직업이 위험한 직종으로서 가입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을 집니다.

④ 회사가 제 1 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거부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반환합니다. 이 경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부부형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 4 조【보험료의 납입】 ①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간중 피보험자가 살아있는 동안 이 계약의 납입방법과 집금방법에 따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가 보험료 납입기간중 문서로 보험료의 납입방법, 집금방법 및 납입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제 5 조【보험료연체시 계약의 효력】 ① 제 2 회 이후의

는 납입기일로 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일까지를 유예기간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계약자에게 유예기간이 끝나기 10일 이전에 계약의 실효를 미리 알리고 계약자가 유예기간이 끝날 때 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는 해약 환급금을 드립니다.

③ 회사가 보험료를 징금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징금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계속 효력을 가지며, 납입하지 못한 보험료는 회사가 다시 징금하기로 한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납입기일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기일로부터 6개월 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 납입이 없으면 그 다음날로부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7조【계약의 부활】 ① 계약이 실효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납입기일로부터 1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하였을 때에는 회사가 지정한 날까지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 개시는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7조【사망급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제1조에서 정한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사망급부금을 지급 하여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계약일 또는 부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살하거나 스스로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2. 수의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장해 상태가 되게 하였을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장해 상태가 되게 하였을 경우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및 해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1. 보험금액의 감액
2. 수의자 또는 종피보험자
3.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③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중 수의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종피보험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④ 계약자는 연금지급 개시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청약시까지 이 약관을 교부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드립니다.

제9조【연금, 사망급부금, 보험료 납입면제 또는 해약환급금의 청구】 ① 수의자는 제1조에 정한 연금, 사망급부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수의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연금, 사망급부금, 보험료 납입면제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 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의 호적초본(연금의 경우)
4. 보험증권
5. 주민등록증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6. 기타 수의자가 연금, 사망급부금, 해약환급금의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10조【연금, 사망급부금, 해약환급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납입면제】 ① 회사는 제9조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연금, 사망급부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망급부금,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사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사망급부금을 지급하여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연금, 사망급부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대출 이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연금, 사망급부금 또는 해약환급금에 가산하여 드립니다.

③ 이 약관에 의한 해약환급금(제5조 제2항 및 제3항, 제8조 제2항 및 제4항)은 이 계약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하여 계산합니다. (별표 3 “해약환급금 예시표”참조)

제11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료 납입면제】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12조【대표자의 지정변경】 ① 수의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다른 수의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수의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다른 수의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제13조【배당금의 지급】 ① 회사는 사업방법서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확정배당금으로 드립니다.

② 회사는 이익금이 발생한 때에는 별도로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에게 이의 배당금을 드립니다.

제14조【계약자 대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증권을 제출하고 대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15조【분쟁조정】 이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

사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보험분쟁 심의 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6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17조【계약자의 주소 변경 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통신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8조【보험증권의 재교부등】 회사는 계약자에 대하여 무료로 보험증권의 정정, 배서, 재교부 등을 해드립니다.

(1)

### 생존 연금 지급 기준표

보험 종류	연금지급 개시연령	연 금 액
본인형	50세개시	개시연금액 : 계약보험금액의 10%
	55세 "	2 차년도 이후 종신까지 연금액: 개시연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체증한 금액
	60세 "	
	65세 "	
부부형	50세개시	개시연금액 : 계약보험금액의 20%
	55세 "	2 차년도 이후 종신까지 연금액 : 개시연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체증한 금액 (단, 1인 생존시는 본인형의 연금액과 동일한 금액)
	60세 "	
	65세 "	

(별표 2)

### 장해등급분류표

1	1. 두 눈의 시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6.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7.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8.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한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1.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
---	--

2	하게 된 때 2.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3.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4 까지 중의 신체장애가 생기고 또한 다른 한팔이나 한다리 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4 까지 중 또는 제 4급의 1부터 3 까지 중에서 신체장애가 발생되었을 때 4. 두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1. 한 눈의 시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2. 한팔을 손목이상 잃었거나 한팔 또는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3. 한다리를 발목 이상 잃었거나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4.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거나 모지 및 인지를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5.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4	6.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2.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3. 한다리가 영구히 5cm이상 단축 되었을 때 4. 한손의 모지 및 인지를 잃었거나 모지 및 인지중 적어도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5. 한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모지 및 인지를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6.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7. 한 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	--

(별표 3)

## 해 약 환 금 예 시 표

40세가입, 전기남, 55세연금개시  
계약보험금액 100만원 기준

구분 경과 기간	본인형		부부형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부부공존시	주피보험자단생시	총피보험자단생시
1개월	5,510	0	11,650	0	29,700	33,640
6 ~	33,060	15,680	69,900	47,890	253,220	276,810
1 년	66,120	46,360	139,800	110,780	521,430	568,620
2 년	132,240	112,840	279,600	247,050	567,880	618,610
3 년	198,360	184,940	419,400	394,770	619,550	673,910
5 년	330,600	348,220	699,000	729,190	735,850	798,230
10 년	661,200	901,630	1,398,000	1,862,220	1,135,150	1,220,930
15 년	991,800	1,765,270	2,097,000	3,641,210	1,765,310	1,875,960

## [종신보험약관]

제 1 조【보험의 내용】 ①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가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보험수의자(이하 "수의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드립니다.

1. 보험기간중 불의의 사고(별표 2 "대상이 되는 불의의 사고" 참조)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생사불명한 경우로서 실종선고를 받았거나 회사가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 또는 불의의 사고 이외의 원인으로 별표 3에 정한 1급 장해(이하 "폐질"이라 합니다) 상태가 되었을 때 다만, 장해 상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 현재의 잠재 상태의 진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2. 보험기간중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폐질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생사불명한 경우로서 실종선고를 받았거나 회사가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

②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별표 3에 정한 2급, 3급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제 2 조【회사의 책임기간】 ① 회사는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제 1회 보험료 기수증을 교부하고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후에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건강조사를 받는 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조사를 끝냈을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가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알리며, 보험증권의 교부는 승낙의 통지로 봅니다. 또한 제 1항 후단의 경우 청약서가 회사에 접수된 날(건강조사를 받는 계약의 경우에는 조사일)로부터 15일이 지나면 회사가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건강조사를

는 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조사를 끝냈을 때) 현재, 피보험자가 이 계약의 적격 피보험체임이 명백한 경우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건강조사를 받는 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조사를 끝냈을 때)로 소급하여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적격피보험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른 책임(피보험자의 직업이 위험한 직종으로서 가입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을 집니다.

④ 회사가 제 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거부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반환합니다. 이 경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드립니다.

⑤ 보험금등의 자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3 조【가입자가 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 ①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건강조사를 받는 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조사시) 청약의 승낙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고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단체로 가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직장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서 사본등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 1항의 질문사항을 알리지 아니하였거나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험사고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사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는 때.
  3.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상 지났거나, 또는 계약일로부터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1년(건강조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지났을 때.
- ③ 제 2 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 해약환급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사고 발생후 해지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제 4 조【보험료의 납입】** ①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간중 피보험자가 살아있는 동안 이 계약의 납입방법과 집금방법에 따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②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중 문서로 보험료의 납입방법, 집금방법 및 납입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제 5 조【보험료 연체시 계약의 효력】** ①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일로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유예기간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계약자에게 유예기간이 끝나기 10일 이전에 계약의 실효를 미리 알리고 계약자가 유예기간이 끝날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계약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료를 집금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집금 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계속 효력을 가지며, 납입하지 못한 보험료는 회사가 다시 집금하기로 한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납입기일로하여 제 1 항 및 제 2 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제 1 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기일로부터 6개월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 납입이 없으면 그 다음날로부터 이 계약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6 조【계약의 부활】** ① 계약이 실효 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실효일부터 1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하였을 때에는 회사가 지정한 날까지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 및 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는 제 2 조 및 제 3 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 7 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회사는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제 1 조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

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계약일 또는 부활일로부터 2년이내에 자살하거나 스스로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 수의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장해상태가 되게 하였을 경우, 그러나 그 수의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의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은 다른 수의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장해상태가 되게 하였을 경우.

② 회사는 제 1 항 제 1 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 1 항 제 2 호 및 제 3 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도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제 8 조【계약의 무효】** ①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18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② 제 1 항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제 9 조【계약내용의 변경 및 해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1. 보험금액의 감액

2. 계약자 또는 수의자

3.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 1 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봅니다.

③ 계약자가 제 1 항 제 2 호중 수의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④ 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전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약환급금은 없읍니다. 다만, 청약시까지 이 약관을 교부 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드립니다.

**제 10 조【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청구】** ① 수의자는 제 1 조에 정한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 면제 사

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수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 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의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 11 조【보험금의 지급, 보험료의 납입면제 또는 해약환급금】** ① 회사는 제 10 조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사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 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대출 이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보험금에 가산하여 드립니다.

③ 제 1 조 제 1 항의 경우에 당해년도의 미납입 보험료가 있으면 이를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④ 이 약관에 의한 해약환급금(제 3 조 제 3 항, 제 5 조 제 2 항 및 제 3 항, 제 7 조 제 2 항, 제 9 조 제 2 항 및 제 4 항)은 없읍니다.

**제 12 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또는 보험료의 납입면제】**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종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리거나 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대표자의 지정변경】** ① 계약자 또는 수의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의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 1 항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

계약자 또는 수의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의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14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의금이 발생한 때에는 별도로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에게 이의배당금을 드립니다.

**제15조【분쟁조정】** 이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보험분쟁심의 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6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17조【계약자의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통신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자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 1 항의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8조【보험증권의 재교부 등】** 회사는 계약자에 대하여 무료로 보험증권의 정정, 배서, 재교부 등을 해 드립니다.

####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보 험 증 권 유 형	경 과 기 간	구 분	보험기간중 피보	보험기간중 피보험
			험자가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또는 폐질시(약관제 1 조 제 1 항 제 1 호)	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 또는 폐질시(약관제 1 조 제 1 항 제 2 호)
1 종	50세미만	계약보험금액의 100%	계약보험금액의 200%	
	50세이상	계약보험금액의 50%		
2 종	55세미만	계약보험금액의 100%	계약보험금액의 200%	
	55세이상	계약보험금액의 50%		
3 종	60세미만	계약보험금액의 100%	계약보험금액의 200%	
	60세이상	계약보험금액의 50%		
4 종	65세미만	계약보험금액의 100%	계약보험금액의 200%	
	65세이상	계약보험금액의 50%		

#### (별표 2) 대상이 되는 불의의 사고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분류항목

1. 철도에 의한 사고.
  2. 자동차 교통사고.
  3. 자동차 비교통사고.
  4. 기타 도로 교통기관 사고.
  5. 수상 교통기관 사고.
  6. 항공기 및 우주 교통기관 사고.
  7.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 ① 외용약 또는 약물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 등

#### ② 질병의 진단, 치료의 목적

8. 기타의 고체 및 액체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 ① 세제유지 및 구리스 용제 기타의 화학물질에 의한 접촉피부염
    - ② 살모네라(Salmonella)성 식중독
    - ③ 세균성 식중독(포도상 구균성, Botulinus성)기타 원인 불명의 세균성 식중독
    - ④ 알레르기성, 식이성 또는 중독성 위장염이거나 대장염
  9. 가스 및 연기에 의한 불의의 사고.
  10. 불의의 추락.
  11. 화재 및 화염에 의한 불의의 사고.
  12.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 ① 과도의 고온
  - ② 고압 및 저압
  - ③ 여행 및 신체 동요에 의한 장해
  - ④ 기아, 갈, 불량환경폭로 및 방치증의 기아, 갈
13. 기타 불의의 사고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 ① 과로 및 격동 중의 과로
  - ②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 연하장해 또는 정신신경 장해 상태가 있는 자의 음식물 흡입 또는 연하에 의한 폐색 및 질식
  - ③ 기타 물체의 흡입 또는 연하에 의한 폐색 및 질식
14.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의 합병증 및 사고.
-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 ① 질병의 진단 목적
  - ② 질병의 치료 목적
15. 타살 및 타인의 가해에 의한 상해.
  16. 법적개입(다만 “처형”은 제외한다).
  17. 전쟁행위에 의한 상해.
  18. 전염병 예방법 제 2 조 제 1 항에 규정한 제 1 종 전염병.

#### (별표 3)

#### 장해등급분류표

1 급 ( 폐 질 )	1.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6.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7.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8.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급	1. 한팔 및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2.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3. 한팔 또는 한 다리중에서 제 3 급의 2 부터 4 까지 중의 신체장애가 생기고 또한 다른 한팔이나 한 다리중에서 제 3 급의 2 부터 4 까지 중 또는 제 4 급의 1 부터 5 까지 중에서 신체장애가 발생되었을 때 4. 두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5.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6.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 한팔의 3 대관절중 1 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2. 한 다리의 3 대관절중 1 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3. 한 다리가 영구히 5 cm 이상 단축되었을 때 4. 한손의 모지 및 인지를 잃었거나 모지 및 인지중 적어도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5. 한손의 5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모지 및 인지를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6.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7. 한 발의 5 발가락을 잃었을 때
	1. 한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 팔을 손목이상 잃었거나 한팔 또는 한 팔의 3 대관절중 2 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3. 한 다리를 발목이상 잃었거나 한 다리 또는 한 다리의 3 대관절중 2 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4. 한손의 5 손가락을 잃었거나 모지 및 인지를 포함하여 4 손가락을 잃었을 때		
급			

기)

1. “평생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없이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2. “시력을 잃은 것”

시력이 0.02이하(시력의 측정은 만국식 시시력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3. “말 또는 씹어 먹는 것의 장해”

- 가) “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것”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1) 어음 구성기능장애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 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2) 뇌언어 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의 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3) 성대전부의 척출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 4)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것”이란 유동식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4. “천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이란 주파수 500, 1 000, 2 000, 4 000 헬스의 경우에 청력상실의 정도를 각각 a, b, c, d 덧밸로 했을때  $\frac{a}{b} + \frac{2}{2} + \frac{c}{d}$ 의 값이 80㏈이상 (귓전에 접하여도 큰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5. “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것”이란 비연골의  $\frac{1}{2}$ 이상이 결손된 경우로서 양측의 비호흡곤란 또는 촉각의 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6.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란 완전히 운동 기능을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 운동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 대관절(팔은 견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 다리는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의 완전 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 7.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
- 가) “척추의 뚜렷한 기형”이라는 것은 통상의 의복을

- 착용하여도 외부로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 나)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해”라는 것은 경추가 완전 강직된 경우 또는 흉추이하가 전후 굽히기, 좌우 굽히기 및 좌우회전운동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frac{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 8. “손가락의 장해”
  - 가) “손가락을 잃은것”이라 함은 모지는 지질간 관절,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질간관절 이상을 잃은것을 말한다.
  - 나) “손 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라 함은 손가락의 원위지질간관절(모지는 말질의  $\frac{1}{2}$ )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손가락의 중수지질관절 또는 근위지질간관절(모지는 지질간관절)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9. “발가락의 장해”
  - 가) “발가락을 잃은것”이라 함은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것을 말한다.
  - 나)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라 함은 첫째발가락은 말질의  $\frac{1}{2}$ 이상 그 외 발가락은

원위지질간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거나 중족지 관절 또는 근위지질간관절(첫째 발가락은 지질간 관절)이 강직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10. 신체의 동일부위
  - 가) 한팔에 대하여는 견관절이하(손가락, 손목이하, 팔꿈치 관절이하, 견관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 나) 한 다리에 대하여는 고관절이하(발가락, 발목이하, 무릎관절이하, 고관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 다) 눈 또는 귀의 장애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 라) 척추에 대하여는 경추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 마) 장해등급표증 제1급의 5,6,7 또는 8, 제2급의 1, 2,3, 제3급의 5, 또는 제4급의 6의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 팔, 두다리, 한팔과 한다리, 10손가락 또는 10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 [유족연금보험약관]

제 1 조【보험의 내용】 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가 다음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수의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유족연금, 장해연금 또는 사망급부금(별표 1 “지급 기준표”참조)을 드립니다.

1. 보험기간중 사망하였거나 또는 생사불명한 경우로서 실종 선고를 받았거나 회사가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 : 유족연금 지급
2. 보험기간중 별표 3에 정한 1급 장해(이하“폐질”이라 합니다) 상태가 되었을 때 : 장해 연금지급. 다만, 장해 상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 현재의 장해 상태의 진단을 기준으로 합니다.(이하 같읍니다)
3. 계약일 이후 2년 이내 별표 2에 정한 불의의 사고(이하 “재해”라 합니다)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폐질 상태가 되었을 때 : 사망급부금 지급

② 보험 기간중 피보험자가 별표 3에 정한 2급, 3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제 2 조【회사의 책임기간】 ① 회사는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제 1회 보험료 가수증을 교부하고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후에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건강조사를 받는 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조사를 끝냈을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가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알리며, 보험증권의 교부는 승낙의 통지로 봅니다. 또한 제 1 항 후단의 경우 청약서가 회사에 접수된 날(건강조사를 받는 계약의 경우에는 조사일)로부터 15일이 지나면 회사가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승낙하기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

11

을 때에는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건강조사를 받는 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조사를 끝냈을 때) 현재, 피보험자가 이 계약의 적격 피보험체임이 명백한 경우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건강조사를 받는 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조사를 끝냈을 때)로 소급하여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보험 사고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적격 피보험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른 책임(피보험자의 직업이 위험한 직종으로서 가입한 도록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을 집니다.

④ 회사가 제 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거부 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반환합니다. 이 경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금융 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드립니다.

⑤ 사망 급부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 합니다.

제 3 조【가입자가 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 ①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건강조사를 받는 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조사

시) 청약의 승낙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하고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단체로 가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직장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서 사본등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대신 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 1 항의 질문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였거나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험사고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는 때
3. 회사가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계약일로부터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1년(건강조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지났을 때

③ 제 2 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 해약환급금은 없읍니다. 그러나 보험사고 발생후 해지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제 4 조【보험료의 납입】 ①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 기간중 피보험자가 살아 있는 동안 이 계약의 납입 방법과 짐금방법에 따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②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중 문서로 보험료의 납입 방법, 짐금방법 및 납입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제 5 조【보험료 연체 시 계약의 효력】 ①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일로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를 유예기간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계약자에게 유예기간이 끝나기 10일 이전에 계약의 실효를 미리 알리고 계약자가 유예기간이 끝날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계약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 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료를 짐금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 회

사의 짐금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계속 효력을 가지며, 납입하지 못한 보험료는 회사가 다시 짐금하기로 한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납입기일로 하여 제 1 항 및 제 2 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제 1 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기일로부터 6개월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 납입이 없으면 그 다음날로부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 합니다.

제 6 조【계약의 부활】 ① 계약이 실효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실효일부터 1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하였을 때에는 회사가 지정한 날까지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 및 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는 제 2 조 및 제 3 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 7 조【사망 급부금, 유족 연금, 장해 연금을 지급 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회사는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제 1 조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3

에는 사망 급부금, 유족 연금, 장해 연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계약일 또는 부활일로부터 2년이내에 자살하거나 스스로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2. 수의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장해상태가 되게 하였을 경우 그러나 그 수의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의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은 다른 수의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장해상태가 되게 하였을 경우
-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도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제8조【계약의 무효】 ① 다음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18세미만자,

지 이 약관을 교부 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드립니다.

조【사망 급부금, 유족연금, 장해 연금 또는 보험료 납입 면제의 청구】 ① 수의자는 제1조에 정한 사망급부금, 유족연금, 장해연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수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사망급부금, 유족연금, 장해연금 또는 보험료 납입의 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 증명서(사망 진단서, 장해 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의자가 사망 급부금, 유족 연금, 장해연금의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11조【사망급부금, 유족연금, 장해연금의 지급, 보험료의 납입면제 또는 해약환급금】 ① 회사는 제10조에 정

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유족연금 또는 장해연금을 감액하여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13조【대표자의 지정변경】 ① 계약자 또는 수의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의자를 대리 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의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의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14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익금이 발생한 때에는 별도로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에게 이의 배당금을 드립니다.

제15조【분쟁조정】 이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제9조【계약내용의 변경 및 해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1. 보험기간
2. 보험금액의 감액
3. 계약자 또는 수의자
4.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봅니다.

③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중 수의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④ 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약환급금은 없습니다. 다만, 청약시까

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사망급부금의 지급 또는 유족연금, 장해연금의 지급을 개시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이내에 사망급부금, 유족연금 또는 장해연금을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급기일내에 사망급부금, 유족연금 또는 장해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자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대출 이용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사망급부금, 유족연금 또는 장해연금에 가산하여 드립니다.

③ 제1조 제1항의 경우에 당해년도의 미납입보험료가 있으면 이를 지급할 사망급부금, 유족연금 또는 장해연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④ 이 약관에 의한 해약환급금(제3조 제2항, 제5조 제2항 및 제3항, 제7조 제2항, 제9조 제2항 및 제4항)은 없습니다.

제12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유족연금, 장해연금 또는 보험료의 납입면제】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

사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보험분쟁 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6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17조【계약자의 주소 변경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통신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자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8조【보험증권의 재교부등】 회사는 계약자에 대하여 무료로 보험증권의 정정, 배서, 재교부 등을 해 드립니다.

(별 표 1)

## - 지급기준표 -

급부종류	지급사유	사망급부금		개시연금액	2차년도이후 연금액	연금지급기간
		일시납	납기납			
사망 급부금	계약일 이후 1년이내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폐질시	납입보험료전액	계약보험금액의 5%			
	계약일 이후 1년이상 2년이내 피보험자가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폐질시	"	계약보험금액의 10%			
유족연금	계약일 이후 2년이내 재해로 인해 사망하였거나 2년이후 사망하였을 때			계약보험금액의 10%	개시연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체증한 금액	만기까지지급하되잔여기간이 10년이하인 경우에는 10년간지급
	계약일이후 2년이내 재해로 인하여 폐질상태가 되었거나 2년이후 폐질상태가 되었을 때			"	"	"

단, 장해연금 지급기간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차기 장해연금 지급일부터 장해연금의 지급을 중지하고 장해연금액과 동액을 유족연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별 표 2)

## 대상이 되는 불의의 사고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으로서 경미한 외인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분류항목

1. 철도에 의한 사고
  2. 자동차 교통사고
  3. 자동차 비교통사고
  4. 기타도로 교통 기관사고
  5. 수상교통 기관사고
  6. 항공기 및 우주 교통 기관사고
  7. 약물 및 의약품에의한 불의의 중독
-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 ① 의용약 또는 약물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 등
  - ② 질병의 진단 치료의 목적
  8. 기타의 고체 및 액체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 ① 세제유지 및 구리스용제 기타의 화학물질에 의한 접촉피부 염
    - ② 살모네라성 (Salmonella성) 식중독
    - ③ 세균성 식중독 (포도상구균성, Botulinus성) 기타 원인 불명의 세균성 식중독
    - ④ 알레르기성 식이성 또는 중독성 위장염이거나 대장염
  9. 가스 및 연기에 의한 불의의 사고
  10. 불의의 추락
  11. 화재 및 화염에 의한 불의의 사고
  12.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 ① 과도의 고온
  - ② 고압 및 저압
  - ③ 여행 및 신체동요에 의한장해
  - ④ 기아, 갈, 불량환경 폭로 및 방치증의 기아, 갈

## 13. 기타 불의의 사고

다음 사항은 제외 한다.

- ① 과로 및 격동증의 과로
  - ② 질병에 의한 호흡 장애, 연하 장해 또는 정신 신경 장해 상태가 있는 자의 음식물 흡입 또는 연하에 의한 폐색 및 질식
  - ③ 기타 물체의 흡입 또는 연하에 의한 폐색 및 질식
14. 외과적 및 내과적 치치의 합병증 및 사고
-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 ① 질병의 진단 목적
  - ② 질병의 치료 목적

15. 타살 및 타인의 가해에 의한 상해
16. 범적 개입 (다만 "처형"은 제외 한다)
17. 전쟁 행위에 의한 상해
18. 전염병 예방법 제 2조 제 1항에 규정한 제 1종 전염병

(별 표 3) 장해등급분류표

1급 (폐질)	1.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 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6.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7.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8.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되고 한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2급	1.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2.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3.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4까지 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또한 다른 한팔이나 한다리 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4까지 중 또는 제 4급의 1부터 5까지 중에서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4. 두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5.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6.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 장해를 오히려 낳겼을 때
	1. 한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2.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3. 한 다리가 영구히 5cm 이상 단축되었을 때 4. 한손의 모지 및 인지를 잃었거나 모지 및 인지 중 적어도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5. 한 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모지 및 인지를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6.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7. 한 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3급	1. 한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팔을 손목이상 잃었거나 한팔 또는 한 팔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3. 한 다리를 발목 이상 잃었거나 한 다리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4. 한손의 5손 가락을 잃었거나 모지 및 인지를 포함하여 4손 가락을 잃었을 때		

(주) 기)

1. “평생 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 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것을 말한다.

2. “시력을 잃은 것”

시력이 0.020이하(시력의 측정은 만국식 시시력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3. “말 또는 씹어 먹는 것의 장해”

가) “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어음 구성 기능 장해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2) 뇌언어 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의 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3) 성대 전부의 척출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이란 유동식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

있는 정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나)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해”라는 것은 경추가 완전 강직된 경우 또는 흉추이하가 전후 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 회전운동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0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손가락의 장해”

가) “손가락을 잃은 것”이라 함은 모지는 지질간관절,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질간관절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라 함은 손가락의 원위지질간관절(모지는 말질의 1/2)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손가락의 중수지질간관절 또는 근위지질간관절(모지는 지질간관절)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9. “발가락의 장해”

가) “발가락을 잃은 것”이라 함은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라 함은 첫째 발가락은 말질의 1/2이상 그외 발가락은 원위지질간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거나 중족지

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4.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이란

주파수 500, 1000, 2000, 4000㎐의 경우에 청력 상실 정도를 각각 a, b, c, d㏈으로 했을 때  $1/6(a+2b+2c+d)$ 의 값이 80㏈이상(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5. “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것”이란 비연골의 1/2이상이 결손된 경우로서 양측의 비호흡곤란 또는 취각의 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6.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란 완전히 운동 기능을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 운동 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팔은 견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 다리는 고관절, 무릎 관절 및 발목)의 완전 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를 준한다.

7.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

가) “척추의 뚜렷한 기형”이라는 것은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질관절 또는 근위지질간관절(첫째 발가락은 지질간관절)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 신체의 동일 부위

가) 한팔에 대하여는 견관절이하(손가락, 손목 이하, 팔꿈치 관절이하, 견관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나) 한다리에 대하여는 고관절이하(발가락, 발목이하, 무릎관절이하, 고관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해에 대하여 두눈 또는 두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경추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마) 장해등급표중 제 1급의 5, 6, 7 또는 8, 제 2급의 1, 2, 3, 제 3급의 5 또는 제 4급의 6의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 두다리, 한팔과 한다리, 10손가락 또는 10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 [재해상해특약약관]

**제1조【특약의 내용】** ①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약이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가 별표 1에 정한 불의의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별표 2에 해당되는 때에는 보험수의자(이하 "수의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상해금부금을 드립니다.

상해동급별약정급부금표

상해급수	상해금부금
2급	계약보험금액의 70%
3급	" 50%
4급	" 30%
5급	" 15%
6급	" 10%

② 제1항에 의하여 특약기간중에 피보험자가 동일한 불의의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중에

두종목이상의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 각각에 해당하는 상해금부금을 수의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상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의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금부금만을 드립니다.

③ 제2항에 규정한 상해금부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불의의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2회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상해금부금을 수의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상해가 이미 상해금부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상해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상해에 해당하는 상해금부금에서 이미 지급한 상해금부금을 감한 차액을 드립니다.

④ 제2항에 있어서 그 불의의 사고전에 이미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상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 다시 제3항에 규정하는 상해의 상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상해에 대하여는 이미 상해금부금이 지

급된 것으로 보고 제3항의 후단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이 특약의 책임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상해로 상해금부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상해
2. 제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상해금부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상해 또는 상해금부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상해
3. 상해로 인한 급부금의 지급한도는 통산하여 계약보험금액의 70%로 합니다.
4. 제1항 내지 제4항의 경우 상해상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 현재의 상해상태의 진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2조【특약의 체결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의 신청에 따라서 주계약에 부가하여 체결합니다.  
② 이 특약을 연생보험에 부가할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계약자로 합니다.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

임 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3조【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합니다.  
나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전 까지로 하며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70세 까지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합니다.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4조【특약보험료 납입면제】**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됩니다.

**제5조【특약의 효력】** ① 주계약이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유예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특약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6조【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할 때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구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제7조【특약의 소멸】** ① 제1조 제1항의 경우 상해금부금 지급액의 합계액이 통산하여 계약보험금의 70%에 달하면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특약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② 주계약이 해약 및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8조【상해금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회사는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상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상해금부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스스로 자신을 해침으로써 상해를 입었을 경우
2. 수의자가 고의로 피보험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그러나 그 수의자가 상해금부금의 일부 수의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은 다른 수의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도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특약내용의 변경 및 해약】** ① 계약자는 특약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② 계약자는 특약기간중 상해금부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전에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약환급금은 없습니다.

다만, 청약시까지 이 약관을 교부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드립니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그 뜻을 배서하여 드립니다.

**제10조【상해금부금의 청구】** ① 수의자는 제1조에 정한 상해금부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수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상해급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상해진단서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의자가 상해급부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11조【특약의 해약 환급금】이 특약이 실효해지 또는 소멸되었을 경우(제5조, 제7조, 제8조 제2항, 제9조 제3항) 해약 환급금은 없읍니다.

제12조【주계약 약관규정의 준용】이 특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별표 1)

## 대상이 되는 불의의 사고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분류 항목

1. 철도에 의한 사고.
2. 자동차 교통사고.
3. 자동차 비교통사고.
4. 기타 도로 교통기관사고.
5. 수상 교통기관 사고.
6. 항공기 및 우주교통기관 사고.
7.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 ① 외용약 또는 약물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 등  
② 질병의 진단치료의 목적  
8. 기타의 고체 및 액체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① 세제유지 및 구리스용제 기타의 화학물질에 의한 접촉 피부염.  
② 살모내리성 (*Salmonella*성) 식중독  
③ 세균성식중독(포도상구균성 *Botulinus*성)  
기타 원인불명의 세균성 식중독.  
④ 알레르기성 식이성 또는 중독성 위장염이거나 대장염.  
9. 가스 및 연기에 의한 불의의 사고.  
10. 불의의 추락.  
11. 화재 및 화염에 의한 불의의 사고.  
12.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① 과도의 고온  
② 고압 및 저압

- ③ 여행 및 신체동요에 의한 장해  
④ 기아, 갈, 불량환경폭로 및 방치증의 기아, 갈  
13. 기타 불의의 사고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① 과로 및 격동증의 과로  
②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 연하장애 또는 정신신경 장해상태가 있는 자의 음식물 흡입 또는 연하에 의한 폐색 및 질식.  
③ 기타 물체의 흡입 또는 연하에 의한 폐색 및 질식  
14.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의 합병증 및 사고.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① 질병의 진단목적  
② 질병의 치료목적  
15. 타살 및 타인의 가해에 의한 상해.  
16. 법적개입(다만 처형은 제외한다)  
17. 전쟁행위에 의한 상해  
18.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종에 규정한 질병.

(별표 2)

## 상해등급 분류표

상해급수	신체장애
제2급	1.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2. 열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3.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부터 4까지 중의 신체장애가 생기고 다른 한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부터 4까지 중 또는 제4급의 1부터 5까지 중에서 신체장애가 발생되었을 때 4. 두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1. 한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 팔을 손목이상 잃었거나 한팔 또는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제3급	3. 한 다리를 발목이상 잃었거나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4.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거나 모지 및 시지를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5.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6.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4급	1.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2.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3. 한 다리가 영구히 5cm이상 단축되었을 때 4. 한 손의 모지 및 시지를 잃었거나 모지 및 시지증 적어도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5. 한 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모지 및 시지를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6.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7. 한발의 5 발가락을 잃었을 때		
제 5 급	1. 한손의 모지 또는 시지를 잃었거나 모지 또는 시지를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거나 모지 및 시지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2. 한 손의 모지 및 시지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3. 한 발의 5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4. 한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상실하였을 때 5. 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 6 급 1. 한손의 모지 및 시지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2. 한손의 모지 및 시지 이외의 한손가락 또는 두손가락을 잃었을 때 3. 한발의 첫째 발가락 또는 다른 4 발가락을 잃었을 때 4. 한발의 첫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3 발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1. 한손의 모지 또는 시지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모지 또는 시지를 포함하여 2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모지 및 시지 이외의 2손가락 또는 3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		

### 〈주 기〉

1. “평생 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 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2. “시력을 잃은 것”  
시력이 0.02이하(시력의 측정은 만국식 시시력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3. “말 또는 씹어먹는 것의 장해”  
가. “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1) 어음 구성 기능장애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2) 뇌언어 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 언어의 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3) 성대 전부의 척출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이란 유동

식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4.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주파수 500, 1000, 2000, 4000㎐의 경우에 청력상실의 정도를 각각 a, b, c, d㏈으로 했을 때  $1/6(a+2b+2c+d)$ 의 값이 80㏈이상(귓전에 접하여도 큰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5. “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것”  
이란 비연골의 1/2이상이 결손된 경우로서 양측의 비호흡 곤란 또는 취각의 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6. “팔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이란 완전히 운동기능을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운동마비 또는 팔, 다리 각각의 3대관절(팔은 견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 다리는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의 완전 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7.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

- 가. “척추의 뚜렷한 기형”이라는 것은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 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 나.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애”라는 것은 경추가 완전 강직된 경우 또는 흉추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운동 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손가락의 장해”  
가. “손가락을 잃은 것”이라 함은 모지는 지질간관절,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질간관절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 나.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라 함은 손가락의 원위지질간관절(모지는 지질의 1/2)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손가락의 중수지질간관절 또는 근위지질간관절(모지는 지질간관절)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9. “발가락의 장해”  
가. “발가락을 잃은 것”이라 함은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것을 말한다.
- 나.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라

함은 첫째 발가락은 말질의 1/2이상 그 외 발가락은 원위지질간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거나 중수지질관절 또는 근위지질간관절(첫째발가락은 지질간관절)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 신체의 동일부위  
가. 한 팔에 대하여는 견관절이하(손가락, 손목 이하, 팔꿈치관절이하, 견관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 나. 한다리에 대하여는 고관절이하(발가락, 발목이하, 무릎관절이하, 고관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 다. 눈 또는 귀의 장애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 라. 척추에 대하여는 경추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 마. 장해등급표중 제 1급의 5, 6, 7 또는 8, 제 2급의 1, 2, 3, 제 3급의 5, 또는 제 4급의 6의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 두다리, 한팔과 한다리, 10손가락 또는 10발가락을 각각 동일 부위라 한다.